

서 면 답 변 서

○ 박미진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제1호 2004. 11. 22)

비수급 빈곤층(차상위 계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지원관련

(질 의)

○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한데 원인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지원사업은 재정여건상 모든 차상위계층을 구제할 수 없으므로 중간단계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에게 3개월(최장 6개월)간 생계구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예 산 액 : 2,534백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기준(월)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49,870	248,210	341,390	429,430	488,260	550,950

○ 실업자 및 신용불량자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 이후 공동모금회와 타 부서에서 사업범위·기준·절차 등에 있어 집행이 용이한 유사사업이 같은 시기에 추진돼 도 자체 사업의 추진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 집 행 액('04. 9월말현재) : 636백만원(집행율 25%)

· 유사사업비교

사업명 구분	비수급빈곤층 한시적생계구호	빈곤가정 위기지원	위기가정 지원
사업 주체	경기도 (자체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
재 원	도비 50% + 시·군비 50%	100% 복권기금	100% 복권기금
예산액	4,158백만원 (본 청 : 283백만원)	5,502백만원 (본 청 : 3,993백만원)	2,821백만원
사업 기간	연 간	2004. 7월 ~ 12월	2004. 7월 ~ 12월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 이 6,000만원 이내로,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 구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생계비는 일반수급자 제외	‘위기가정 SOS 상담 소’에 신고 또는 도 움을 요청한 위기가 정중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지원 기준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생계 비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	· 생계비 : 60만원(1회) · 의료비 : 200만원이내 (가구당 1회) ※ 중복지원 불가	· 생계비 : 2개월간 최저생계비 중 식 료품비에 해당하 는 금액 · 의료비 : 100만원 이내(1인당)
선정 절차	읍·면·동 조사→시·군생 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시·군 확정	읍·면·동 조사→시· 군 취합 · 송부→공동모금회 지원 위원회 확정	읍·면·동 조사→ 시·군 확정

※ 공동모금회에서 2003. 10월 ~ 2004. 6월 한시지원사업 기 실시(3,975백만원 지원)

－ 한시지원사업은 빈곤가정 위기지원 사업과 유사

- '04. 9월말 현재 시·군별 추진실적은 양평군 77%, 광주군 0.1% 등으로 실적이 우
수한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대상자에게 구호비를 지급하였으
나 일부 시·군에서는 본 사업보다 집행이 쉬운 유사사업으로 대상자를 지원하
고 있어 편차가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 본 사업 최장 6개월로 지원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기간내 취업·건강회복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구와는 별개로 지원기간 경과 후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
해서는 유사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
는 방안을 검토하며,

- 향후 본 사업의 추진실적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인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절차 폐지 등 집행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대상자 발굴지원

(질 의)

- 당초 경기도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발굴목표가 2,916명인데 선정된 인원이 26.4%정도 밖에 되지 않고 발굴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시·군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목표인원 배정의 배경]

- 각종데이터를 고려해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15%인 22천명을 추정하여 시도별로 목표인원을 배정해 우리 도의 배정인원은 전국 22천명의 약13%인 2,916명입니다.

[선정된 인원이 26.4%로 발굴이 저조한 이유는]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사업은 '04년도 신규사업으로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교육, 홍보문 배부, 지도·점검 등을 시행하였으며
 - ※ 교육 3회, 홍보문 배부 3회, 지도점검(중앙합동 4회, 자체 2회)
- 본 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사업초기의 개별적인 시책홍보의 한계와 일선 담당자의 타 업무 겸임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발굴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굴실적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 9월말 437명(15.5%)⇒10월말 770명(26.4%)⇒11월 15일 현재1,205명(41.3%)
-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약 2.5배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현행 인력으로 전수 조사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 설사 질환병력이 있더라도 조사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상당히 접근이 조심스럽고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는]

- 시·군별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목표인원을 보건복지부의 방침과 같이 시·군별로 수급권자의 13%로 배분을 하였으나, 부천시 92%, 평택시 6% 등으로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 담당자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일관되게 업무추진을 하지 못해 편차가 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의 발굴과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강화로 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 시·군별 차상위 의료급여 발급실적

(단위 : 명)

시군명	목표인원	9월말실적	10월말실적	11.15일 현재	비 고
총 계	2,916	437	770	1,205	
수원시	216	17	45	111	
성남시	272	51	70	98	
부천시	246	120	196	227	
안양시	112	14	17	26	
안산시	241	28	70	93	
용인시	73	7	20	28	
평택시	144	5	9	9	
광명시	106	10	29	41	
시흥시	73	8	18	30	
군포시	68	3	36	53	
화성시	72	13	19	37	
이천시	68	9	13	22	
김포시	40	2	5	15	
광주시	48	6	7	13	
안성시	69	9	12	20	
하남시	39	16	17	23	
의왕시	20	1	5	7	
오산시	29	6	6	8	
여주군	59	6	14	35	
양평군	59	14	16	19	
과천시	14	2	3	3	
고양시	178	11	12	53	
의정부	124	10	21	60	
남양주	109	6	7	12	
파주시	88	14	21	31	
구리시	65	9	12	20	
포천군	73	10	18	29	
양주군	45	4	5	7	
동두천	53	20	28	31	
가평군	66	2	14	34	
연천군	47	4	5	10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 관련

(질 의)

- 노숙인 보호시설의 지원비 사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의 필요성 하다고 말씀하시면서
- 노숙자들을 부랑인 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 특정단체를 동원 강제 구인 하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조치, 노숙인 문제의 장기적·체계적인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내에는 수원, 성남, 안양 등 3개 시·군 9개소의 노숙인 쉼터에 현재 180명의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 도내 노숙인 쉼터에 대하여는 10월말 현재 1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실태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노숙인 쉼터를 포함한 부랑인 시설에 대하여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숙인들이 역전, 터미널 등에서 구걸 행위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노상에서 취식, 음주, 노상방뇨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각종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 시·군의 합동 순찰반원들이 거리 노숙인들을 부랑인 시설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노숙인과 순찰반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앞으로 노숙인들을 부랑인 시설로 안내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순찰활동에 반드시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시·군이 노력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 노숙인들에 대하여는 근로를 통해 알콜리즘 치료와 생애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주기 위해 자활프로그램 등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구체적 지원내역과 예산지원확대 방안 및 시군별 활성화 방안은?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인건비로 통일하고 인건비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전담교사 배치와 관련한 대책은?
-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이용아동 중 결식아동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와 비율은?

(답 변)

- 우리 도내에는 118개소(법인 62, 단체 40, 개인 16)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02개소(법인 62, 단체 40)에 운영비와 83개소에 학습기자재 구입비를 지원(총 1,222,312천원) 하고 있습니다.
 - 운영비는 102개소 중 국비지원대상 54개소는 시설당 국, 도, 시·군비 월 672천원과 도비 500천원을 추가하여 총 1,172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국비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시설 29개소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월 1,17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단, 계획 및 예산편성이후에 설립된 공부방 19개소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월 672천원 지원)
 - 학습기자재비로는 83개소에 PC, TV, 비디오, 책상 등을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당 연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공부방)활성화 방안으로는 '04. 7.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지역 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으며
 - 동 시행령이 시행되는 '06. 1. 1이전에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05년부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소당 월 2백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인건비로 통일하는 문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서 사무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일부에 치우치지 않게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전담교사에 대한 배치는 예산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총 118개소이며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 62, 단체 40, 개인 16개소로 이중 결식아동이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나
 -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 급식 요구가 있는 경우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하였으며 민간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어린이가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 의)

- 노인복지예산에서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노인교통비의 부담 증가에 따른 전면적 검토 등 대책 및 쿠폰이나 할인제도 등으로의 변경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의 노인복지예산(국·도비)은 114,772백만원, 경로연금은 27,806백만원, 노인교통비는 16,006백만원으로써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가 도 노인복지예산의 38.2%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지방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지방의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특히, 노인교통비는 전액 지방비(도비 15%, 시·군비 85%) 부담이므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노인교통비 지급제도가 대한노인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교통비 수혜를 노인의 권리확보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저소득 노인의 경우,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는 중요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교통비의 전면적인 검토나 쿠폰(승차권)으로 변경 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노인교통비의 일부(5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지난 10월 우리 도에 대한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시

건의한 바 있으며 시·도지사 정책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2004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부담 비율	도비	부담 비율	시·군비	부담 비율	비 고
경로연금	32,713	22,899	70%	4,907	15%	4,907	15%	
노인교통비	106,706	-	-	16,006	15%	90,700	85%	

(질 의)

- 도내 치매노인 출현율과 인구수, 다양한 치매노인 지원시설과 더불어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는 현재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정원 835명 규모의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11개소(본청 6, 2청 5)와 363병상 규모의 용인·여주도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2003년말 치매 유병률은 8.3%로 54천명을 치매노인으로 추정
⇒ 자료 : 치매관리Mapping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수원시 등 11개(본청 8, 2청 3) 지역에 정원 810명 규모의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안산시 등 3개 지역에 노인전문병원 신축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2006년까지는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하여 보호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서는
 - 낮 동안 보살펴 드리는 주간보호시설 34개소(본청 26, 2청 8)를 운영 중이고
 - 치매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살펴 드리는 단기보호시설 7개소(본청 5, 2청 2)를 운영하고 있음

-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40개 치매상담센터를 통하여 치매환자 등록, 보호자 상담, 치매예방 및 간병요령 교육, 시설입소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5개년 확충계획(2004~2008)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의 요양보호대책을 추진할 것임
- 도내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

(2003. 12. 31일 기준)

시군별	전체인구	노인인구	노인인구율(%)
합 계	10,206,851	661,268	6.48
수원시	1,032,944	50,309	4.87
성남시	962,048	56,314	5.85
고양시	865,077	57,609	6.66
부천시	844,256	44,232	5.24
안양시	604,505	34,373	5.69
안산시	651,625	29,815	4.58
용인시	575,255	36,852	6.41
의정부시	394,803	25,480	6.45
남양주시	403,755	28,431	7.04
평택시	364,979	29,050	7.96
광명시	336,083	20,046	5.96
시흥시	368,223	16,503	4.48
군포시	273,765	15,297	5.59
화성시	236,226	21,717	9.19
파주시	237,658	23,336	9.82
이천시	190,753	15,426	8.09
구리시	192,947	10,698	5.54
김포시	203,391	15,557	7.65
포천시	150,240	14,367	9.56
광주시	191,466	13,187	6.89
안성시	151,522	16,199	10.69
하남시	128,326	8,632	6.73
의왕시	143,388	8,734	6.09
양주시	148,062	11,108	7.5
오산시	118,167	5,828	4.93
여주군	104,030	12,332	11.85
양평군	83,730	12,749	15.23
동두천시	74,735	7,077	9.47
과천시	70,324	5,030	7.15
가평군	55,060	8,089	14.69
연천군	49,508	6,891	13.92

도내 식중독 사고를 비롯한 위생관련 예산집행의 문제점

(질 의)

- 보건복지국의 전체 예산은 증가했으나, 위생관련 예산은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이 1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03년, '04년 식중독 예방교육을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실시했는지, 연초부터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 노력과 예산집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생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며 식중독 사고가 근래 특정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 매년 전년도 식중독 발생 실태를 평가·분석하여 시·군 실정에 맞는 예방교육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식중독예방관리대책을 3월경에 시달하고 있고
- 현재 학교급식소 지도·점검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 그중 위탁급식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하여 식약청, 도, 시·군, 교육청 합동으로 지도·점검과 조리종사자 보건검사, 환경가검물 수거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에 대해서는 교육청 계획에 따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의 경우는 매년 3월~5월까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경기도에서는 시·군별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 4월에 식중독 예방표준교재 7,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교육 미 참석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홈 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 2월 9일 식품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단체로 하여금 교육과목에 식중독 예방교육시간을 편성케 하는 등 식중독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 및 인력 관련

(질 의)

- 보건소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03년도에 비해 '04년도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 보건소 직종별 정원대비 인력현황에서 의무·약무·간호·의료기사는 부족하고 보건·기능직은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유와 충원을 어떻게 되는지
- 정원도 채우지 못하면서 업무대행직을 사용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치아홈메우기 국비 예산액이 2003년도 402,128천원에서 2004년 130,206천원으로 줄어든 것은
 - 2003년도 중앙에서 배정된 경기도 사업량이 50,924명으로 보건소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등에 비하여 과다 책정되어 보건복지부 회의시 사업량 조정을 건의함에 따라
 - 2004년에는 적정 사업량인 21,701명으로 조정되어 예산액도 함께 감소한 것입니다.
- 보건소 직종별 정원대비 인력현황이 일부 직종에서 부족하게 나타난 사유는
 - 일부 시군에서 지소, 진료소 인원 조사 시 착오가 있었으며 동 자료의 정원은 지역보건법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며
 - 시·군 조례에 의한 정원 대비 현원에서는 총 18명이 부족한 것으로 재파악이 되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의무 9, 약무 2, 간호 9, 보건 3, 행정직 2명이 부족하고, 의료기사 2, 기능직 5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채용방법은 대부분 면허 소지별 제한경쟁으로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 업무대행자 중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우선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